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1-577-0014

※ 본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신청자격, 입지조건, 신청일자 등 일체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공급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급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된 공급 상담의 경우, 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공급신청과 관련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신청 시 유의 사항】

- 당해 주택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 최초 공급신청시 각 주택형별 배정 물량의 100%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일(2026.05.11.)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국내 거소 외국인, 법인 명의 청약 불가)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공급신청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되고,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임차인을 선정(동·호수 배정 포함)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사업자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임차인모집 승인 대상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 관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계약금 및 중도금)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사용검사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예정입니다.
- 향후 주택도시보증금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당해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회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후 주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입주 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 또는 전대인은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및 관리주체가 전대 확인 및 건물점검, 수리 등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당해 주택은 1인 1건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시책 및 기타 임대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는 불가합니다(공급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은 청약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다만 계약금(1차 및 2차) 납부 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차인 변경 요청 시 임대사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현장수납(건본주택) 하지 않으니 지정된 납부일에 무통장(온라인) 입금하시고 계약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임대사업자는 수납 관련하여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 금액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선납 금액은(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계좌 이외에 현장수납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보증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홈페이지(<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12 규정에 의거 아산시 공동주택과로 임대주택 공급 신고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83-1 일원(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 33층 9개동 총 821세대(일반분양 738세대 포함) 중 민간 임대 83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아산시 거주자 우선 배정	기타 지역 거주자 (아산시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합 계
084.9865A	84A	84.9865	26.7048	111.6913	51.3608	163.0521	46.9889	-	-	67
084.9767B	84B	84.9767	26.3518	111.3285	51.3549	162.6834	46.9835	-	-	16
합 계										83

※ 대지 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이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 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약 식 표 기	동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임대 보증금	계약금(5%)		중도금(50%)					잔금(45%)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6.10.21	'27.01.21	'27.07.21	'27.12.21	'28.06.21	입주지정일
84A	101동	67	1층	8	334,800,000	10,000,000	6,740,000	33,480,000	33,480,000	33,480,000	33,480,000	33,480,000	150,660,000
	102동		2층	19	341,500,000	10,000,000	7,075,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153,675,000
	103동		3층	19	348,200,000	10,000,000	7,410,000	34,820,000	34,820,000	34,820,000	34,820,000	34,820,000	156,690,000
	104동		4층	19	361,600,000	10,000,000	8,080,000	36,160,000	36,160,000	36,160,000	36,160,000	36,160,000	162,720,000
	105동		5층	2	365,000,000	10,000,000	8,25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164,250,000
	106동												
84B	101동	16	1층	3	327,100,000	10,000,000	6,355,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147,195,000
	102동		2층	3	333,800,000	10,000,000	6,69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150,210,000
	103동		3층	5	340,400,000	10,000,000	7,020,000	34,040,000	34,040,000	34,040,000	34,040,000	34,040,000	153,180,000
	105동												
	106동		4층	5	353,800,000	10,000,000	7,690,000	35,380,000	35,380,000	35,380,000	35,380,000	35,380,000	159,210,000

※ 연체료 납부시 주말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됩니다)

※ 해당 동호수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주)디케이종합개발이 사업시행주체로서 (주)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이하 "**사업주체 겸 임대사업자**"라 함)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입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및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 주체는 (주)디케이종합개발(이하 "**위탁자**"라고 함)입니다.
- 당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항에 의거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5%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을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에 따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기본시설 및 발코니확장 추가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보증수수료, 전세권 설정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요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합니다).
 - 입주 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단, 입주 시 1회 납부).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 중 아파트 대지지분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또는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등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에 포함한 모든 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임대료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의거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증사고로 인한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아래 표의 부담비율로 분담 납부합니다. 단,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
|------|---|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보증기간 | 임대계약기간 |
| 보증대상 | 임대보증금 전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 |
| 부담주체 |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매년 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함) |
| 납부방법 | 월 관리비 납부시 관리비와 함께 포함하여 납부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 시 보증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보증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전대 또는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첨 무효, 해약 및 퇴거 조치합니다.
 - 임대주택은 임대차기간 동안 전매(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상속인 경우 제외) 및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됩니다(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 및 사용 절차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를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관련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를 적용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임대사업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각 동호별 필로티 높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전환 조건은 전환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무기간 및 계약조건

- 임대무기간 : 10년 이상(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조에 의해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음).
- 임대조건의 변경
 1.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의 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3. 임대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 등]에 의거,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간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 시 임차인의 지위 및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승계됩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양도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의무 임대기간(10년) 만료 후 분양전환가격 및 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적의 조정하여 결정하며, 분양전환 당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의 권리를 부여하며,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세대는 임대사업자가 임의 공급할 예정으로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전환 조건
 1. 분양전환 시기 :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가능
 2.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금액 산정 기준 : 분양전환 금액은 임대사업자가 적의 조정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3. 분양전환 대상 :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단, 임차인의 적극적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정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 할지라도 당첨을 취소하고 고발 조치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전환시 당해 주택에 대한 수선, 보수의 범위는 외부도장에 한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임차인 모집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III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청약신청 자격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 거주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신청 불가)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계약자격조건(계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거주지 등)의 판단기준입니다. - 청약 신청은 홈페이지(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에서만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은 필수사항으로 휴대폰 명의는 반드시 청약자 본인 명의이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해 주택은 1인 1건에 한하여 공급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신청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신청 자격 미달 등)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임차인 모집일은 공급 자격조건(거주지, 국적, 만 나이 등)의 판단기준입니다.

IV 신청일정, 장소 및 신청방법

■ 신청일정, 장소 및 신청방법

신청일시	장소	신청방법
2026.05.12.(화요일) 09~18시까지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홈페이지 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청약신청 절차 안내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 청약하기 배너 ▶ 청약 안내 및 유의사항 체크 ▶ 개인정보활용 동의 ▶ 본인인증 ▶ 청약 신청(거주지 및 신청 주택형 선택, 주소지 등록 등) ▶ 청약 신청 완료
청약접수 확인 방법	홈페이지(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청약 신청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청약신청금	없음

※ 청약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주택 접수가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일시	장소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본 주택의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선정 순서에 따라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함에 따라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일시

신청일시	발표일시	당첨자 발표장소	비 고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추첨 결과	2026.05.13.(수요일) 12시 이후	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당첨자 확인 메뉴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는 임대사업자가 공정한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동호수를 추첨합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안내

기 간	장 소	임대보증금 납부 계좌안내
2026.05.14.(목요일) 10~16시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건본주택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3)	농협은행 317 - 0030 - 3233 - 11 (예금주 : 한국토지신탁)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건본주택에서는 계약금 현금수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임대보증금을 상기 지정계좌로 계좌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0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체결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구성 사유 포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용,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용,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부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택품목 계약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전 임차인이 선택한 선택품목에 대한 탈착 이동 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선택품목 미공사 세대 기준으로 원상복구 공사를 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에 임대사업자 또는 위탁자를 대상으로 임차인 비용으로 설치한 선택품목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 수량	설치 장소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선택1	2대	거실+침실1(안방)	LG전자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2	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7,250,000	725,000	6,525,000
84B	선택1	2대	거실+침실1(안방)		4,100,000	410,000	3,690,000
	선택2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5,180,000	518,000	4,662,0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7,000,000	700,000	6,300,000
	선택4	5대	거실+침실1(안방)+주방+침실2+침실3		8,940,000	894,000	8,046,000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과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각의 냉매매립배관·연결용 매립박스·에어컨전원만 제공되며, 이는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안방 이외 실에는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별도로 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용 배관·박스·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세대별 차이가 있고, 기능상 장애가 우려될 경우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공간에는 용량에 맞는 실외기가 각 실내기 소요 용량 합산, 조화률을 고려하여 제조사가 보증한 범위 내에 적합한 사양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실외기에 스탠드형·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연결할 수 없으며, 임의 연결로 인한 문제는 계약자 책임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은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스프링클러·천장 내부 배관·우물천장·커튼박스 크기·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제어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유선 컨트롤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냉·난방기기는 전시용품으로, 본공사와 사양·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조사·모델은 품질·품귀·공급 중단·신제품 출시·성능 개선 등 사유로 동등·동급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시공 일정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냉매배관·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이물질 유입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가격 및 선택품목이 상이하며, 설치 위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으로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분양서류,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선택품목 납부계좌	농협	317-0030-3235-81	(주)한국토지신탁

VII 기타 유의사항

■ 임차인 대출안내

- 임대사업자는 향후 중도금 집단대출 및 보증을 알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별도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개인 신용 및 조건에 따라 대출 알선 조건의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분양권 포함)는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자의 경우 무이자 대출이 적용됩니다.
- 임차인은 관련 법률 개정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전세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만약 대출조건 제한으로 인한 대출 진행 불가 시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향후 중도금 집단대출 알선 시 중도금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는 입주 지정 최초 개시일 전 일까지만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입주 지정 최초 개시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해제(해지)일 즉시 임대사업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액을 변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금융기관·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임차인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차인은 중도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이 다소 변경(하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집단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해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검사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임대료/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임대주택의 매각 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임대무기간은 10년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관련 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무기간 이내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임대무기간 중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허가).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는 매입하는 자에게 포괄승계됩니다.

■ 발코니 확장

- 본 임대주택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미확장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공급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확장 부위(발코니 샷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이 전출 시 임차기간동안 사용상 발생한 발코니 확장 부분의 하자보수에 대하여서도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전출 전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대리인과 함께 입회하여 당해 세대의 상태를 점검 후 예측가능한 수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하여야 전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하자 수리 비용의 사용에 대한 증빙은 전출한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문서 또는 사진으로 증빙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조치한 부분과 비용처리 영수증 전송 등).

■ 임차인 사전방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에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임차권 양도·양수

- 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날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은행이 있을 경우, 은행과 사전협의 필요).

■ 일반공통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십시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단, 정산이 필요한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공동주택 부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이후에 이전되는 경우 등)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수탁자(사업주체 겸 임대사업자)인 (주)한국토지신탁"과 위탁자인 "(주)디케이종합개발"간에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시점 또는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이 위탁자의 명의로 이전된 시점 중 선평래 시점에 본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리와 "(주)한국토지신탁"의 "임차인"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인 "(주)디케이종합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 인허가

- 현장 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은 2024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24.08.08)'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지자체, 인-허가 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층 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아산탕정 도시개발구역 내 위치한 사업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사업지의 사업계획 및 경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 광고

- 임차인 모집공고 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 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목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임대 관련 각종 홍보물(리플렛, 임대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 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 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단지 주변은 현황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전 사업부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기반시설,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유발요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분양승인 신청서류 기준)과 전시품(조명, 가구, 그림, 장식물, 각종 소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과 전시용 전원설비 등은 설치되지 않고 분양승인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부대시설, 커뮤니티시설 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는 유상옵션 및 패키지 옵션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서류(평면도, 시방서 등)가 비치되어 있으며,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기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외벽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질·품귀·생산중단·제조회사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마감자재(예: 타일 등)는 자재 특성상 본 공사 시 일정한 무늬·색상 공급이 어려우며, 품질 판단은 KS 기준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등은 상황에 따라 타입·위치·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위치·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형태·위치·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 유상옵션 적용 시 전기 배선기구·설비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 문틀은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일반 철재 현관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는 배관·배수구·일반 환풍기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타입의 천장 높이는 2.4m(1층, 최상층 한정, 테라스하우스는 제외)이며, 계약 세대의 실제 층고(기준층 2.3m)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전시조명,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책상 및 의자, 식탁 및 의자, 소파 및 테이블, 화장대 의자 등 포함), 백 패널 및 장식물, 그림,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밥솥, 다용도실 용품, 토스터, 커피머신, 의류관리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배관·배선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이동식 가구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단지 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현황·설비·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 연출용 시공 부분은 전시용 자재 및 조명, 배관·배선이 포함되어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사업승인(최종 변경)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내·외부 조경은 전시용으로 실제 시공과 무관합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 표현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도로·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설계 이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상업시설 홍보 모형·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조경·시설물·마감재·입면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부, 엘리베이터 홀,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탑승 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 (공사 중 사업계획승인 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관련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선홍통, 배수구, 점검구, 스프링클러, 조경기구, 조명 스위치, 콘센트 및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필요 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바닥배수 및 점검구는 실제 배관 설치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보일러 관련 장비 설치에 따라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지환경(도로, 기반시설, 유해시설 등)

- 본 사업지 남측에 주유소가 위치하며 단지 외부에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위락시설 등의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악취배출시설(축사)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 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 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기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 경관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가로수, 도로, 공원, 녹지 등)은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동선(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 계획변경이나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 계획은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 구간이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사면 경사/단차 구조물(옹벽 등)이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 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기반 시설물의 변경으로 인해 단지 내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에는 아산테크노 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아산탕정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산업단지 위치에 따른 건강 영향 항목 확인을 위하여 공기질 측정 중이므로, 측정 결과가 사업주체에게 제공될 시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2021년 측정 결과는 아산 탕정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참조).
- 본 사업지 남측 이순신대로 완충녹지에 소음 저감대책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테라스하우스 및 일부 저층 세대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1동 우측면에 생태 육교가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지 공동주택의 경우, 초등학교는 아산갈산초등학교로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교는 탕정 학군[탕정중학교, 아산갈산중학교, 가칭 탕정4중학교(2027. 3. 개교 예정)]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니다. 다만, 입주시기에 맞춰 가칭 탕정4중학교 개교가 지연될 경우, 기존 탕정 학군(탕정중학교, 아산갈산중학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는 교육지원청 의견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 배치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소관이며,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십시오.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관련 사항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 사업승인시 권고 사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 또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포함. 이하 같음)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협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내 “협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원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반납할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단지 관리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지자체 또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에게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용역비 등 고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 차량이 단지 내에 출입할 수 있고,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함께 돌봄센터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 설치 단지입니다. 단,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며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관련 사전 안내 및 수요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105동, 106동 사이에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접 세대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주동계획

- 단지 배치도상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 근린생활시설·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설계되며, 세대 내부의 벽체는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 벽체로 시공됩니다. 실간 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VII 입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및 사업부지의 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자 통로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어 외부인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의 배치에 따라 특정 세대는 일조권·조망권·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주차장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냄새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 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갈산초등학교 방면 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은 학교 협의와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구조형태 및 시공방식 등이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관계기간의 협의에 따라 서측 옹벽 설계변경시 지하주차장 기초구조형식이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 동의 일부 라인에는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 등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은 각동 서측 인근, 107동 108동, 109동은 테라스동 사이 옥외계단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총 8개소가 위치에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2동, 103동 저층 세대는 전면 테라스하우스 세대와 인접하여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108동, 109동 각 세대 후면 선큰 공간은 특정 세대에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관리 동선만 설치될 예정입니다.
- 107동, 108동, 109동 각 세대는 인근 보행로, 데크와 인접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99A타입 저층 세대 전면에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한 천장이 인접하여 설치됨에 따라,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106동 북측면에 낮은 산 및 경사면과 옹벽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조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6동 저층 세대 저층 세대는 문주와 인접하여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대표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

- 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는 105동, 이동통신 중계장치는 102동, 103동 104동, 106동의 각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 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층과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전자파 영향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는 옥상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에 의한 바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다용도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코니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 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 시설의 외부에 금속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는 경우, 인근 세대에 반사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 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 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소음, 놀이터와 운동시설 소음, 쓰레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관계 법령(건축법, 민법)에서 정한 일조 확보 기준 및 수인 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시공되었습니다.
- 동절기 등 계절·시간대에 따라 일부 세대의 거실 및 침실 등에서 일조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각 동별, 세대별 수인 한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조권 관련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수인 한도 및 일조 시간 확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하자·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외관 계획

-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 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6동 주동 상부 외벽 일부 구간에 BIPV(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모형도를 통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의 특화 및 마감 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 시공 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 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이 제한되거나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지붕층에는 소방 관계 법령 및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인명 구조공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필로티 내외부 벽체는 석재 또는 판넬, 석재 뿔칠, 석재 미장, 그래픽 도장 등으로 최종 설계변경 도면에 따라서 시공될 예정이며,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 지하주차장의 구조는 부속동 활용성 및 하자 예방을 위하여 위치, 면적, 층별 층고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1,141대) 및 근린생활시설(4대)을 포함하여 총 1,145대(경차,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 규모로 지하 1층~지하 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상 주차구획은 기둥, 소화전, 설비 배관 및 벽등으로 인해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높이·면적, 비내력벽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PIT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59기(급속 12기, 완속 47기)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동측 주출입구 지하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는 2.7m로 소형 택배차는 진입 가능하나, 사다리차·대형차·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지하2층 주차장 주행 유효 높이는 2.3m).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동별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 주차 운영·통제는 관리주체의 책무입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 공간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매연 등으로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및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주차부스(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 통제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외부에서 비·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로 폭·출입문 크기 등 구조적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캐노피의 형태·마감재·색채 등은 사업승인 변경 또는 동선·기능·성능 개선을 위해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교차로가 형성되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간섭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동별 이용 상황에 따라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 주차면 부족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민원 제기는 불가합니다.
-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작은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한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부대시설(관리사무실, 단지 내 도로, 자전거주차, 조경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소방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은 아파트 입주자가 공유하며,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인수 전까지는 사업주체 또는 위탁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대별로 부과되며, 이후 운영·관리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가구, 비품,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며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홍보 동영상의 표현된 시설물(운동기구, 타격 스크린 장비 등등)이나 전시용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사항이므로 홍보 영상 및 투시도의 설치 수량이나 브랜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외부에는 냉난방기의 실외기 설치로 인해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실외기 설치장소와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외부에는 외벽체의 환기 및 배기를 위한 마감캡이 설치되어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천장에 유지보수를 위해 천정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자전거 보관대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조망·환경·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치를 명확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 위치·규모·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은 각 동 서측 인근, 107동 108동, 109동은 테라스동 사이 옥외계단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총 8개소가 위치에 있으니, 계약 전 단지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인 휴게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도서관, 사우나 등 및 부속동(경로당, 어린이집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 부대시설에 대한 홍보 동영상의 표현된 시설물(운동기구, 타격 스크린 장비 등등)이나 디피(DP) 용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사항이므로 홍보영상 및 투시도의 설치 수량이나 브랜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 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향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평면, 가구 및 마감재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 개폐 방향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기준높이는 2.3m로 시공됩니다(단, 1층·최상층 세대는 2.4m, 욕실·발코니·현관·우물천장, 다용도실 제외, 테라스하우스는 2.3m로 시공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구조 위치 또는 실별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패널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주방가구·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으로 가려지는 벽·바닥·천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레일·조명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타일·상판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무늬·패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모델로 시공되더라도 견본주택과 색상·디자인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등 석재류와 주방 상판은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으며, 변색 방지를 위해 반드시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시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하며, 자외선·세제·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에서 사용성 개선과 하자 예방을 위해 주방가구, 발코니 가구 및 각종 수납공간은 일부 구성과 위치, 세부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이 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욕실장 후면과 욕조 접합 벽·바닥에는 타일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여닫이 출입문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세대 내 PVC 도어는 동급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위생도가·수전류·액세서리류(수건걸이·휴지걸이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수전류·샤워부스·철재류 등은 반드시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하며, 철수세미 사용 시 흠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지 않습니다.
- 세대 욕실 창문과 인접 시설의 창문 배치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수납계획(디자인·크기·도어 수), 우물천장 유무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올림 공간(우물천장)의 천장고는 상부 세대 및 당해 층 설비 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조명·월패드·설비 배관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이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 및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따라 일부 면적이 가구·건식 벽체 등으로 채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주방·침실 바닥재는 목재 마루로 시공되며, 스팀청소가·물걸레 등 습식 청소 시 장시간 수분 노출로 인해 변형·뒤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벽체는 석고보드 경량 벽체로 시공되므로, 부착물 설치 시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은 가스 배관·후드 배기관 설치로 인해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석 및 주방 상판 석재 마감은 이음 부위가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테라스, 선크의 도장·마감재질·색상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의 테라스 전용 구역(아래층의 지붕)은 공용공간으로,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해야 하며, 등기를 통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 옥외 및 테라스에 임의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등의 사유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시설 복구 및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창호

-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단열시물레이션·사용성 등), 관련 기준 등에 따라 프레임 구조·규격·위치·색상·개폐방식·방충망·유리 사양 및 체결방법·하드웨어·난간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유리는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파손 시 상당한 교체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위탁자·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는 외벽 마감재 시공에 따라 외부 창호 크기가 다소 축소·변경되거나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폭,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규격·사양·형태·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도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 위치가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모든 창호와 난간대의 사양·형태·크기·위치·높이·재질·색상·열림방식 및 방향·난간대 설치 여부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 (기계 / 전기 설비 등)

- 공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천정 및 벽체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기계실 및 발전실·기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관련 설계도서(지하 주차장 평면도) 및 상담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장 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 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력 방지를 위해 영구 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지하주차장·필로티·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공용부위에 설치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조명(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의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및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휀룸, D/A)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연휀룸 설치로 인접 세대에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는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등 기계실 인접 세대는 장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저수조실·주차장 등의 층고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체 높이는 공사 여건 및 시공 방법 등에 따라 피난층 및 옥상 조형물 공법 변경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종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 복도, 지하주차장 천장부와 벽면은 기계 배관,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미관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시설 (기계, 전기, 설비 등)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급수·온수·난방 등 설비 배관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 박거나 드릴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가스배관·가스밸브·스위치·조명·수전·콘센트·보일러·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현관창고·욕조·샤워부스·발코니, 일부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욕실 천장에는 상부층 배관, 설비, 점검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온도조절기 및 환기 컨트롤 등은 제품의 상향 또는 단종으로 인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세대 개별공사 시 조명기구 및 스위치 등 전기 관련 부품은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위탁자·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된 식탁 예상 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 분전함,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치 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단자함은 세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 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 및 월패드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렌지후드 작동 시 기계 소음 및 배관의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연도(배기 배관)는 연소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분리·조정·변경할 경우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가 실내로 누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시공업체 또는 관리주체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실외기실의 그릴창은 반드시 개발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닫힌 상태에서 작동할 경우 통풍 불량으로 인한 과열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하우스의 테라스 배수를 위해 외벽면에 배수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

- 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은 스마트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며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폰 단말기가 인터넷(통신사, WIFI)에 연결이 필수 조건이고, 아파트 단지의 스마트홈 구축 사항 및 외부 네트워크망 연결 여부에 따라 제어 및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은 운영사(HT beyond)의 정책에 따라 성능개선, 인터페이스 업데이트 등의 사유로 기능의 추가 및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된 UI/UX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의 일부 기능에 대하여 운영사 사업정책에 따라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 조건은 운영사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은 입주지정일 기준 3년간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후에는 사용자(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운영사(HT beyond)간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서비스를 지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 시설

부대 · 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9년 01월 예정(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원자재 파동,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전용 및 공용) 등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열쇠 인수, 이사, ~~소유권이전 및 고지서~~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열쇠 인수일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가 안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열쇠 인수일 또는 잔금 납부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임대보증금액(중도금 및 잔금), 및 추가 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 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실 시공시 현장 여건, 전기, 설비, 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2.7m
지하 2층	2.3m	2.3m

※ 주차면의 **유효 높이는 2.1m로** 계획되었으며, 상기 유효 높이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 의무사항 적용 여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 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설치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 15,860,240,000	제 01282026-704-00200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 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 그 납부증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② 보증회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임차인은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 호	(주)와이드디앤씨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무소	(주)한국나이스기술단	(주)에이스엔지니어링
금 액	3,083,630,000	792,299,000	842,216,811	275,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수탁자 겸 임대사업자	한국토지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110111-1258220
시공사	(주)동일토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06, 402호(두정동, 엠프라자 4층)	110111-0629026
위탁사	(주)디케이종합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청담동, 신영빌딩)	110111-7732161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 사항

※ 등록업자 : 한국토지신탁(주)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10
 ※ 사업방식 : 분양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 시 개별 등기
 ※ 사업계획승인 : 2025.07.08.

■ 분양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디케이종합개발이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디케이종합개발이고, (주)한국토지신탁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2. 임차인은 대상 부동산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주)한국토지신탁이 임대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의무, 공법상 의무 및 임차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주)디케이종합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임대보증금은 본문 기재 (주)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임대보증금 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본 임대차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후 하자 불문, 오시공·미시공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자인 (주)디케이종합개발 및 시공회사인 (주)동일토건이 부담한다.
5. 계약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1BL의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계약자는 위 분양목적물의 대지가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공급한 대지로서 계약자의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은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용지조성사업 준공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7. 임대차계약 목적물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임대인 또는 공급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주)한국토지신탁이 임대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한국토지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회사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디케이종합개발에게 있다.
8. (주)한국토지신탁은 중도금 대출금 앞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분양계약 해제를 구할 수 없다.
9. 상기 분양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사항보다 우선한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3번지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견본주택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3

■ **홈페이지** : <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 **문의전화** : 041-577-0014 (10:00~17:00)